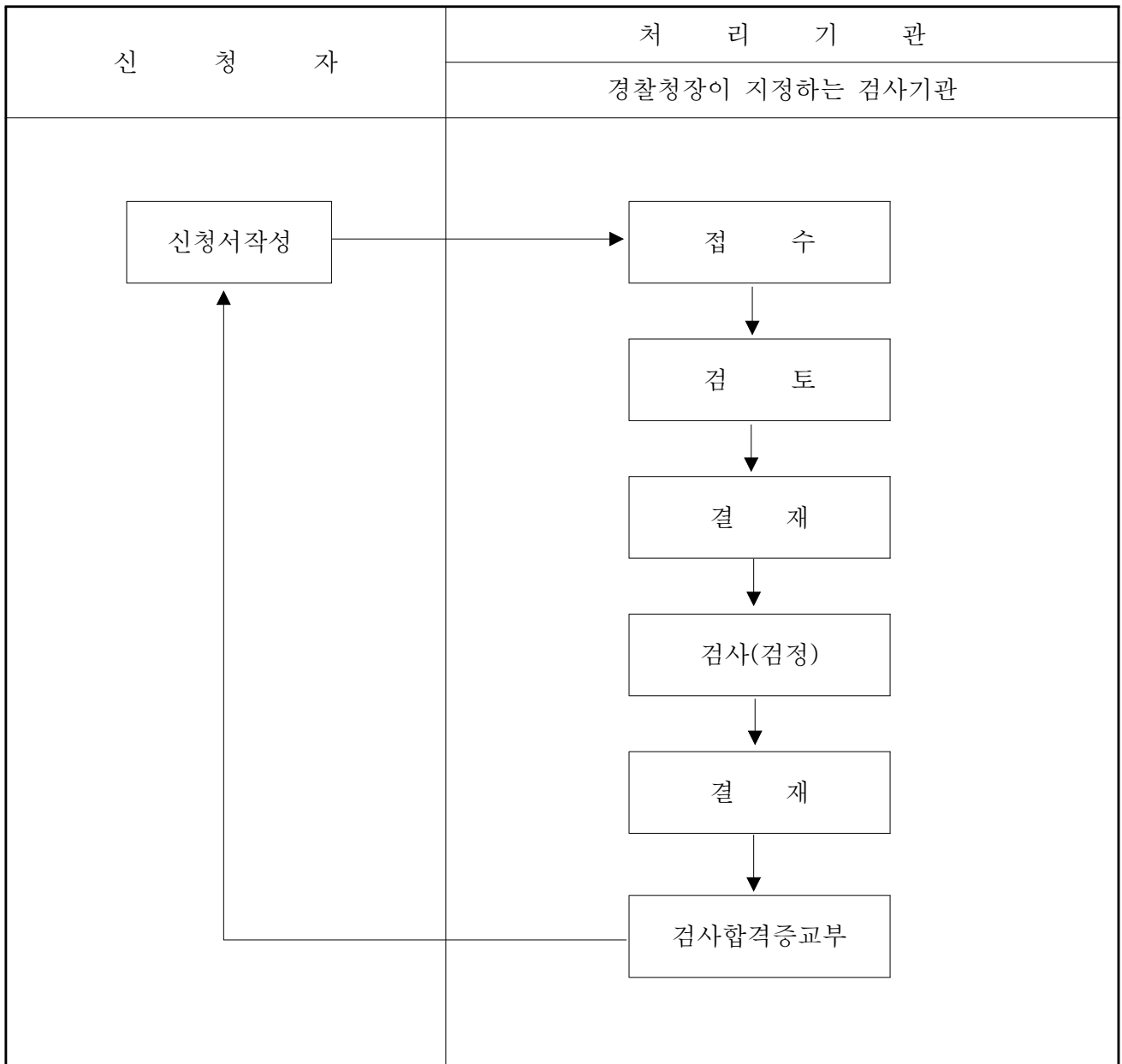


사행기구 검사 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15일
신청인	①성명		②주민등록번호	
	③주소		④전화번호	
⑤제품명 및 형식			⑥제품수량	
⑦제품의소재지				
⑧제조(수입)업소			⑨제조(수입일자)	. . .
⑩제조(수입)번호				
<p>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행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찰청장 지정검사기관장 귀하</p>				
구비서류 1. 사행기구 제조증명서(품명, 제조업자, 제조연월일, 제조번호,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) 1부 2. 사행기구 수입증명서(수입의 경우에 한한다) 1부 3. 사행기구 도면(회로도 포함한다) 1부 4. 사행기구 작동설명서 1부 5. 사행기구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 1부 6. 사행기구(전면,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)의 사진 1부 7. 기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				수수료
				뒷면참조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뒷면)



수 수 료(규칙 제31조 관련)

1. 회전판돌리기업

가.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것 : 17만원

나.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없는 것 : 13만5천원

2. 주요부분 구조변경·회로수정 또는 주요부품 교환등에 따른 재시험 검사

: 1만5천원(다만,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)